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지 능 형 해 상 교 통 정 보 서 비 스 의 제 공 및
이 용 활 성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표준 제정에 따른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1호, 2020. 1. 29.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절차, 단말기 설치 면제 대상 및 단말기의 등록·변경·말소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절차(안 제2조)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해상교통정보의 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정보가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단말기 설치의 면제 및 등록 절차(안 제3조)

단말기의 설치를 면제하는 선박은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호소 및 하천 등 내수면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법」에 따른 기선·범선,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법」에 따른 어선, 임시항해(또는 임시항행)검사 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되는 선박, 시운전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단말기의 기술 기준 및 단말기의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

다. 타인 토지 등에 대한 시설물 출입증(안 제4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등에 필요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물 출입증’으로 정하고 그 양식을 규정

라. 규제의 재검토(안 제5조)

단말기의 기술 개발 등에 따른 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마. 단말기의 등록 등에 대한 적용례(부칙 안 제1조)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단말기 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선박에 설치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단말기를 이 규칙에 따른 단말기로 인정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 범위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상교통정보의 가공 및 제공 등에 드는 비

용, 해상교통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설치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

2. 내수면안에서만 항해 또는 조업하는 선박

3.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선박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또는 「어선법」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5. 시운전 선박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 또는 운항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단말기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장비로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에 대한 접속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포

시에 적합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장비를 말한다.

1. 해상무선통신망에 접속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장비(이하 “송수신기”라 한다). 이 경우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장비에 한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권역센터가 설치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④ 제3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3항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첨부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단말기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으로 발급된 단말기 식별 정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변경사항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선박명칭·선종·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2.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송수신기 또는 표시장치 중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⑦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박에 설치된 단말기의 정보 등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확인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 단말기 등록을 신청한 선박소유자에게 제6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 받은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말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단말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시설물 출입증)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설치 면제 선박에 대하여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등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단말기를 설치·등록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조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민원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	팩스	
	주소		
	담당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정보내용			
이용목적	[]연구개발 []통계작성 []사업활용 []기타 ()		
제공형태	[]출력물 []전자파일 []기타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해당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감면사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되는 경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정보 제공	→	정보 수령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 등록 [] 변경 [] 말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 기간	7일	
선박 소유자 정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			
	담당자	전화		
정보	팩스	전화번호		
선박 정보	선명	[] 선박번호 :		
		[] 어선번호 :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		
	총톤수	항해구역 []국제항해 []국내항해	선적항(또는 계류지)	
선박의 종류	선박의 종류			
	[] 일반화물선, [] 유조선(가스·석유·유해액체물질 운송선박), [] 여객선, [] 어선, [] 동력수상레저기구, [] 기타(세부선종 :)			
단말기 정보	구분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송수신기			
	표시장치			
변경 등록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역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 1.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 「어선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수수료 무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지방해양 수산청	→ 검토 지방해양 수산청	→ 결재 지방해양 수산청	→ 등록확인서 발급 지방해양 수산청	→ 등록확인서 수령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인정보, 선박 정보 및 위치정보, 단말기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위치정보 관리,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관리, 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가입 정보 등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및 「해운법」 등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 해상교통 관리의 과학화·고도화 및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해양수산부는 말소 후에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상교통정보를 활용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단말기 제작업체에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적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단말기제작업체(업체명:)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신청인이 가입하려는 선박 및 단말기에 관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단말기 등록과 이에 부대되는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임자

(서명 또는 인)

제 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확인서

선박소유자 정보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담당자	전화		
	팩스	전자우편		
선박정보	선명(영문명)	총톤수	선종	
	선박번호(어선번호 또는 등록번호)	선적항(계류지)		
단말기 정보	구분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송수신기			
	표시장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관리정보	구분	식별정보	통신번호	유심번호
	송수신기			
	표시장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앞 쪽)

(뒤 쪽)

시설물 출입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No:
PASS FOR FACILITIES (시설물 출입증)
Organization(소속):
Name(성명):
Date of Birth(생년월일):
위 사람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설등에 출입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4mm×86mm[PVC(비닐) 980.4g/㎡]

< 의안 소관 부서명 >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연 락 처	(044) 200-6142